

(앞쪽)

제 호	← 2cm → ↑ 2.5cm ↓ (사진)
증 표	
1. 소속:	
2. 직급:	
3. 성명:	
4. 생년월일:	
위 사람은 「공인노무사법」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7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함	
년 월 일	
고용노동부장관 직인	

95mm×65mm(인쇄용지(특급) 120g/㎡)

(뒤쪽)

1. 「공인노무사법」 제1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. 2. 「공인노무사법」 제25조제7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